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 산 자 원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2) 현행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방법 등은 구체적 내용 미비로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 사용이 빈번하여,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 3)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를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가능토록 현실화함

나.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

령으로 격상

- 2) 현행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나,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구체적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므로,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를 법령에 명확화

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관리를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 1)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일관된 제한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역별 실정과 갈등양상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실정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함

라. 수산자원 회복 등 위한 위탁 대상 사업 확대(안 제51조제1항제12호)

- 1) 연안에 대한 수산자원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단 등에서 수산자원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 확대

마. 비어업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별표 17)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른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나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구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외줄낙시에 대한 사용제한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른다.

1. 투망
 2.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3. 외줄낙시(대낙시 또는 손줄낙시)
 4. 가리, 통발
 5. 낚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삽
 7. 제1호에서 제6호 외에 어업과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m 미만인 크기가 작은 도구(원형인 경우 지름 50cm 미만인 도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구 또는 방법을 사

용할 수 없다. 다만, 외줄낚시에 대한 사용제한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른다.

1. 1인당 1개를 초과하는 것
2. 전기, 압축공기, 스프링, 고무 등 동력을 이용하는 것
3. 열림, 차단 등의 기구적 장치가 있는 것
4. 집어등(야간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밝기 2천 루멘 이하의 휴대용 전등은 사용 가능)

③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려주는 등의 목적으로 잠수에 도움이 되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1. 수경
2. 숨대롱
3. 잠수복 및 잠수모
4. 오리발
5. 수중칼
6. 호루라기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과 어구의 세부사항, 사용장소, 사용시기 및 수

산자원의 종류별 수량 등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
2.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 현황
3.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⑥ 시·도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산자원의 조사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 제1호	100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 제2호	200		

다.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 제2의2호	50	100	200
라.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 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 제2호	50	100	100
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을 받지 않고 수산종자를 생산·방 류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 제3호	100		
바. 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않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 제4호	100		
사. 법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 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 제5호	2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와 방법

(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 가. “어구”(漁具)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나. “방법”(方法)이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식을 말하며, 탐어(探魚)와 집어(集魚) 및 어획의 과정을 포함한다.
- 다.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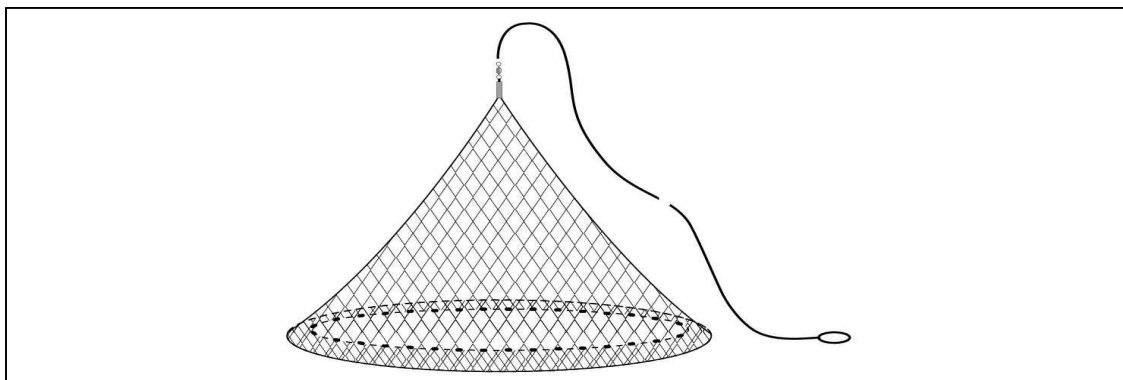
2.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와 방법

가. 투망

- 1) 투망이란 원뿔형태의 그물로, 윗부분에는 기다란 손잡잇줄이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는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그물이 넓게 펴지도록 물에 던진 다음 손잡잇줄을 서서히 당겨 추가 바닥에 닿은 채로 그물이 오므라들도록 하여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는 그물의 아래 둘레가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가-1과 같다.

[부도 가-1]

투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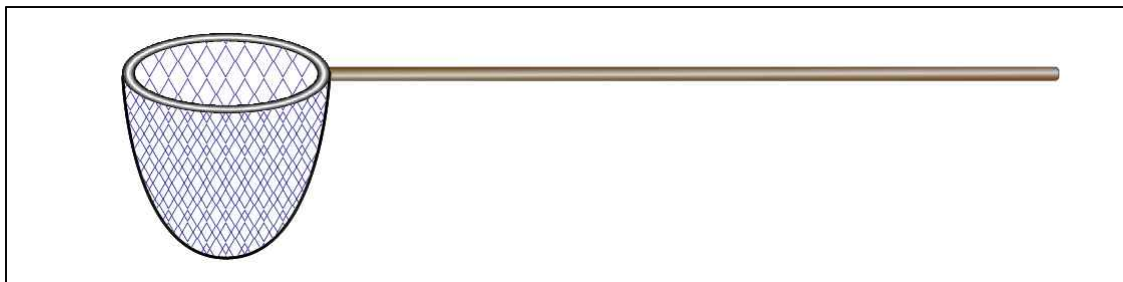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 1) 뜰채(쪽지)는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대나무나 철사 등으로 테를 두르고, 테에 한 개의 막대로 된 손잡이를 붙여 만든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손잡이를 잡고 이를 조작하여 대상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는 그물의 가장 긴 변(테가 원형인 경우 지름은 1미터 이하)이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나-1과 같다.
- 2) 반두(쪽대)는 사각형태 그물의 아랫 부분에는 추가 달려 있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막대로 손잡이를 붙여 만든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손잡이를 잡고 그물을 펼친 후 대상물이 펼쳐진 그물 위로 가도록 하여 재빨리 들어 올려서 잡는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는 그물의 가장 긴 변이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나-2와 같다.
- 3) 손들망은 일정한 모양의 틀이나 테의 아래쪽에는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달고, 윗쪽에는 목줄과 돋움줄(당김줄)을 단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어구를 물속에 넣어 두었다가 대상물이 그물 위에 오면 돋움줄을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는 그물의 가장 긴 변(틀이나 테가 원형인 경우 지름은 1미터 이하)이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나-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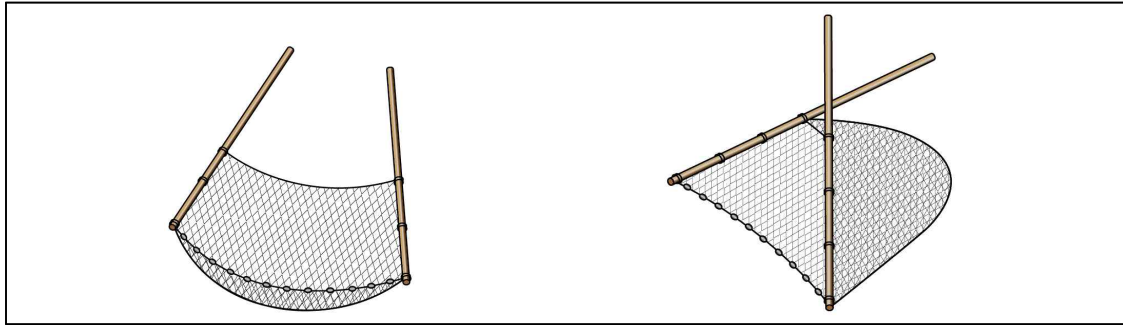
[부도 나-1]

뜰채(쪽지)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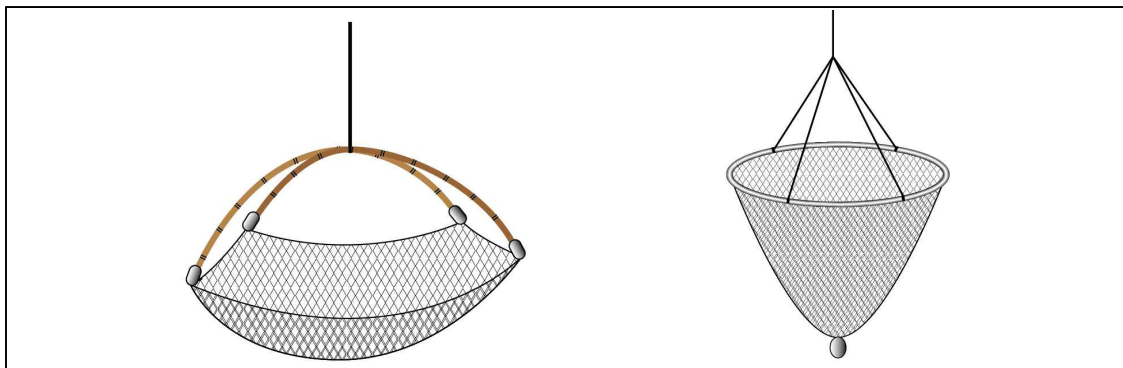
[부도 나-2]

반두(쪽대) 어구 겨냥도



[부도 나-3]

손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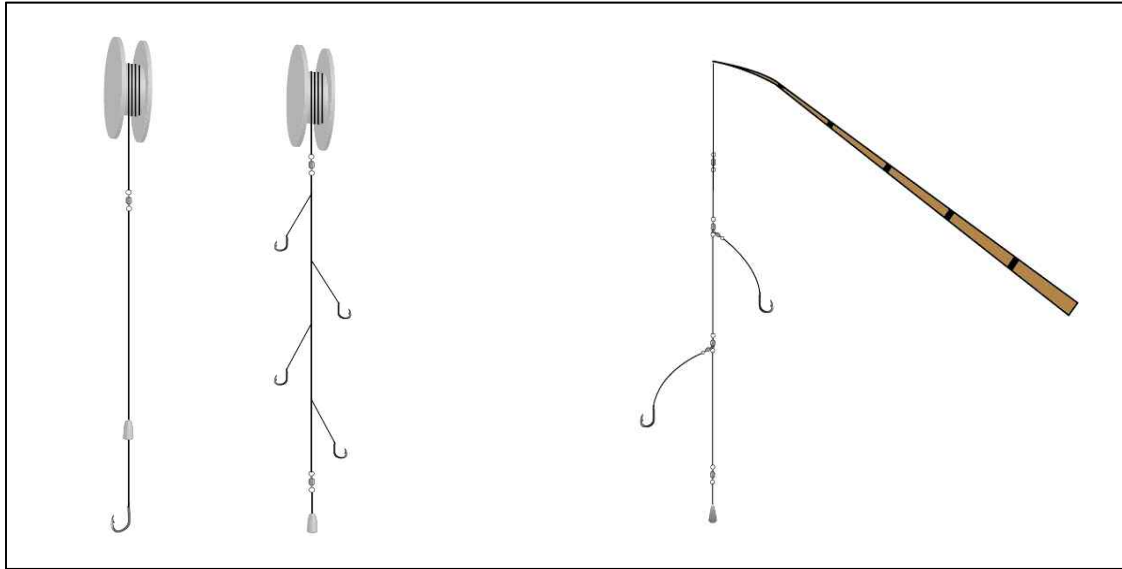


다. 외줄낚시

- 1) 외줄낚시는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단 어구를 말하며 대나무 등 긴 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낚시에 미끼를 끼우거나 속임낚시를 사용하여 물속에 넣고 낚시에 대상물이 걸리면 낚싯줄을 감아올려 대상물을 잡는다. 외줄낚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제한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른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다-1과 같다.

[부도 다-1]

외줄낚시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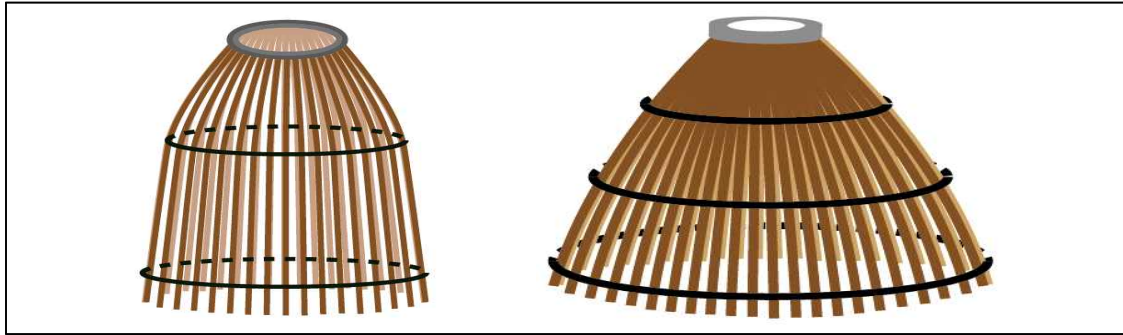


라. 가리, 통발

- 1) 가리는 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엮어서 밑과 위가 뚫린 원뿔대 모양으로 만든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주로 얕은 물에서 대상물 위에서 덮어 씌워 대상물을 가둔 후, 위쪽에 있는 구멍으로 손을 넣어 대상물을 잡는다.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가로·세로·높이의 길이는(원통형인 경우는 지름) 각각 6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라-1과 같다.
- 2) 통발은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데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통발에 긴 줄을 달아 물속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들어 올려 통발 속에 들어간 대상물을 잡는다.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가로·세로·높이의 길이는(원통형인 경우 지름)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통발의 개수는 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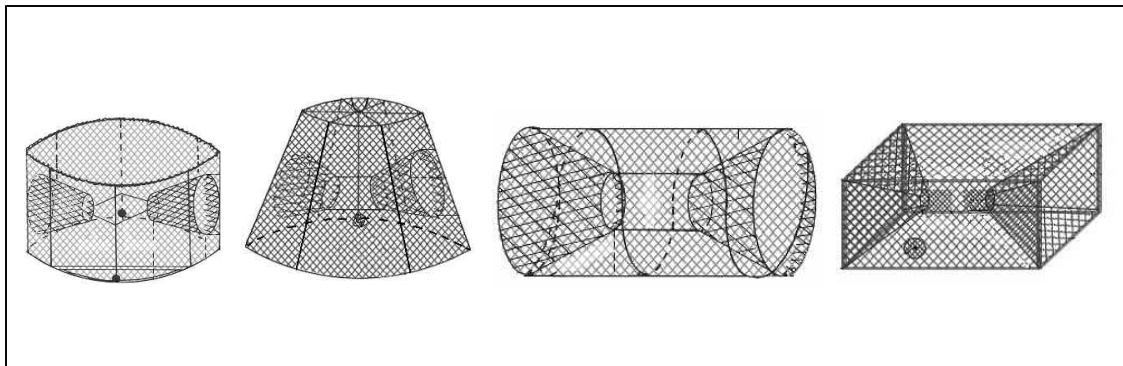
[부도 라-1]

가리 어구 겨냥도



[부도 라-2]

통발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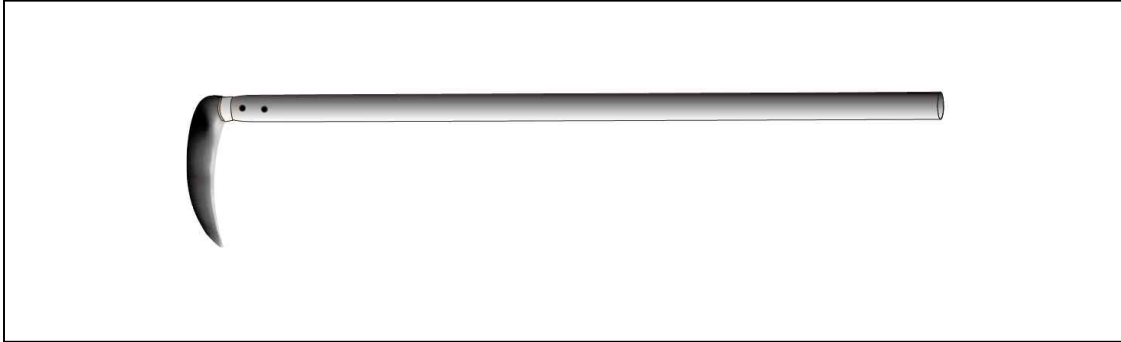


마. 낚대

- 1) 낚대는 낚에 대나무 등 장대를 연결한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장대 끝에 달린 낚으로 해조(海藻)를 자른 후, 가까이 끌어당겨서 채취한다. 해조(海藻)의 채취는 비료용으로 사용할 때로 한정한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마-1과 같다.

[부도 마-1]

낚대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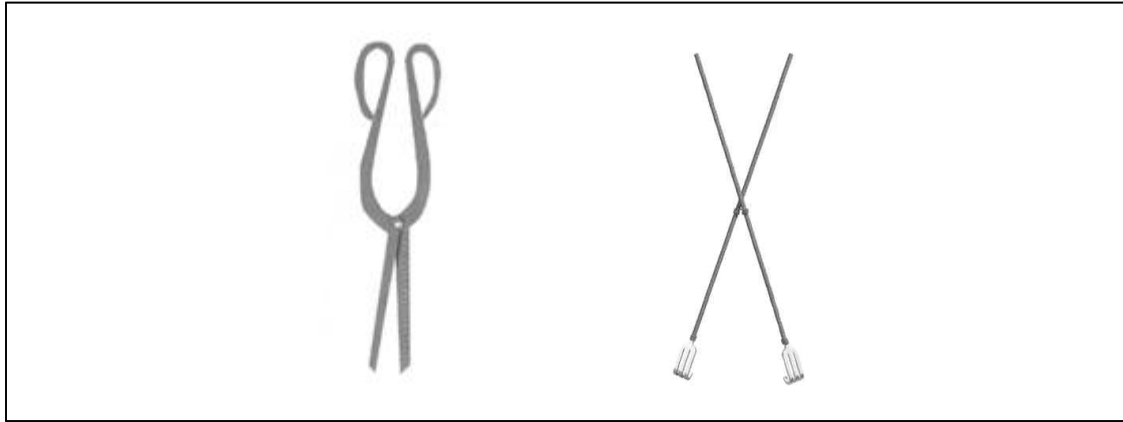


바. 집게, 갈고리, 손갈퀴, 호미, 삽

- 1) 집게는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그 끝으로 대상물을 집을 수 있는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대상물을 갈래 사이로 넣고 갈래 끝을 서로 맞닿도록 조작하여 대상물을 집어서 잡는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바-1과 같다.
- 2) 갈고리는 쇠를 구부려서 앞쪽 끝은 뾰족하게 만들고, 뒤 끝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어구로, 뾰족한 앞쪽 끝이 1개인 외갈고리 외에 앞쪽 끝이 여러 개인 갈고리들도 포함한다. 사용 방법은 주로 대상물의 몸체를 꿰어 잡거나 그 주변을 파내어 잡는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바-2와 같다.
- 3) 손갈퀴는 한쪽 끝이 우그러진 철사 등으로 부챗살 모양으로 엮고 그 끝에 손잡이를 만든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모래나 갯벌 속에 있는 대상물을 캐내어 대상물만을 걸러내어 잡는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바-3와 같다.
- 4) 호미는 끝은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 삼각형의 쇠판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뾰족한 끝으로 대상물의 주변을 파내거나 대상물을 캐내어 잡는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바-4와 같다.
- 5) 삽은 삼각형 등의 얇은 판(板)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어구이다. 사용 방법은 대상물 또는 그 주변의 흙 등을 파거나 떼서 대상물을 잡는다. 어구 겨냥도는 부도 바-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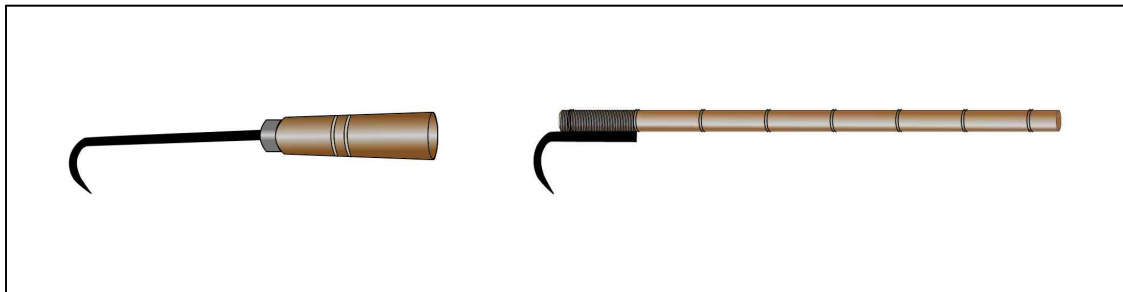
[부도 바-1]

집게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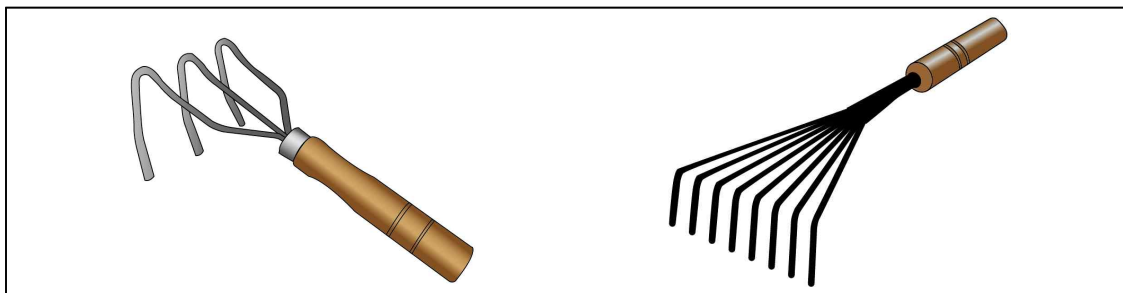
[부도 바-2]

갈고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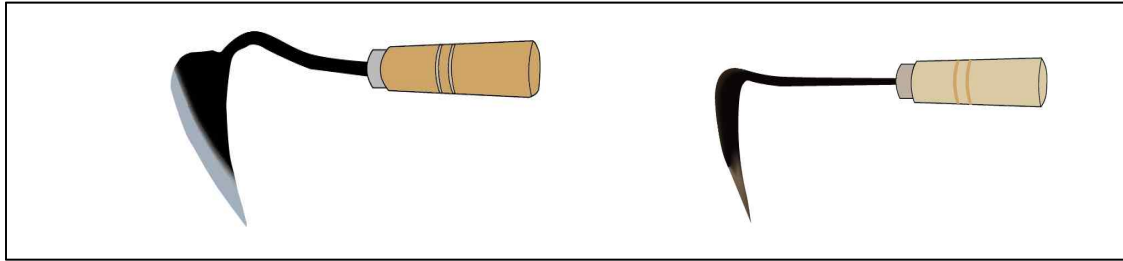
[부도 바-3]

손갈퀴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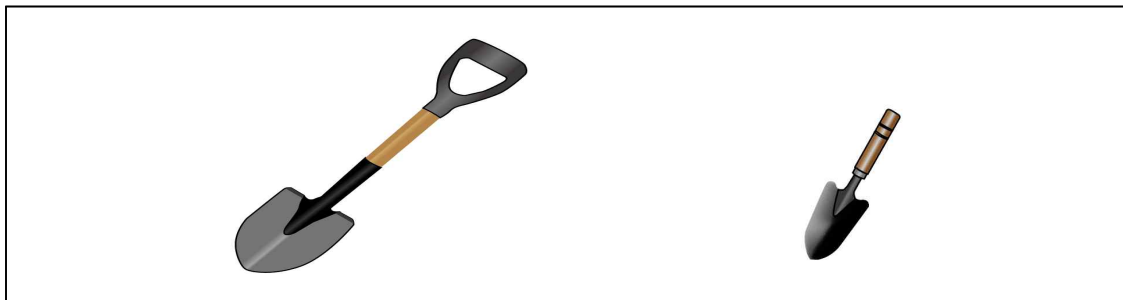
[부도 바-4]

호미 어구 겨냥도



[부도 바-5]

삽 어구 겨냥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른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나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구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외줄낙시에 대한 사용제한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른다.</u> <u>1. 투망</u> <u>2.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u> <u>3. 외줄낙시(대낙시 또는 손줄낙시)</u> <u>4. 가리, 통발</u> <u>5. 낚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u>6. 집게, 갈고리, 호미, 삽</u> <u>7. 제1호에서 제6호 외에 어업과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m 미만인 크기가 작은 도구(원</u>		

형인 경우 지름 50cm 미만인
도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
인은 다음 각 호의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줄낚시에 대한 사용제한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
른다.

1. 1인당 1개를 초과하는 것
2. 전기, 압축공기, 스프링, 고무
등 동력을 이용하는 것
3. 열림, 차단 등의 기구적 장치
가 있는 것
4. 집어등(야간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밝기 2천 루멘 이하의 휴
대용 전등은 사용 가능)

③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
획·채취할 경우 「수중레저활동
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중
레저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만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등의 목적으로
잠수에 도움이 되는 장비는 사
용할 수 없다.

1. 수정

2. 숨대롱

3. 잠수복 및 잠수모

4. 오리발

5. 수중칼

6. 호루라기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과 어구의 세부사항, 사용장소, 사용시기 및 수산자원의 종류별 수량 등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

2.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 현황

3.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

	<u>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u> ⑥ 시·도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수산자원의 조사</u>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33